

[특집]

스페인 외방선교회

지침서

마드리드
1989

소개

회헌과 더불어 여러분께 제6차 총회에서 작성한 지침서를 소개합니다.

인류복음화성이 회헌에 대한 수정의견에 맞추어 원문에 최소량의 수정 사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그 본성상 훨씬 더 현 시대에 맞게 덜 엄하며 더욱 자유로운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IEME가 오랜 역사를 통해 쌓아온 삶의 경험에서 나왔고 앞선 수차례의 총회에서 광범위하게 다룬 결실임은 물론이고, 어떤 모양으로든 여기 실린 법규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영성과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문헌입니다.

모쪼록 선교생활을 규정하는 이 법규들이 모두에게 본연의 삶을 충만하게 살게 하는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12월 3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축일에 마드리드에서.

총원

목차

I. 도입

II. 지원자들의 양성

[A] 신학교

신학생들의 양성

신학교담당 팀

[B] 선교준비 과정

목적

책임자

학업의 기본 과목

유연성

과정 참가자들의 장래 행선지에 관한 대화

[C] 지원자들의 자질

III. 그룹 내의 선교사들

그룹들의 설정

행선지 교구와의 협약

현지 교회의 삶에 투입

그룹 내에서의 전문화

그룹들과 총원

선교사를 그룹에 등록하기

받아들임

그룹과의 통교

다원성

신앙의 공동체적 표출

상호간의 배려

그룹과의 통교의 단절

그룹들 간의 관계

은퇴자와 환자의 그룹

IV.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총회에 소속된 선교사들

V. 회의체의 대표성에 관한 규범

VI. 공통 업무

- [A] 일반 규범
- [B] 사무처
- [C] 양성부
- [D] 홍보 및 선교증진 부
- [E] 전체 관리부
- [F] 은퇴자와 환자 지원부
- [G] IEME의 본부
- [H] 잡지 'Misiones Extranteras'(외방선교)

VII. 경제제도와 선교사들의 사회보장

- [A] 일반 기준
- [B] 선교사들의 경제 제도
 - 1. 그룹들 내의 선교사들
 - 2. 공통 업무와 총원에 종사하는 선교사들
 - 3. 총원 직속 선교사들
 - 4. 은퇴한 선교사들
 - 5. 일시적으로 스페인에 머무는 환자 선교사들
- [C] 채무
- [D] 사회보장

VIII. 결론

I. 도입

- 1 이 지침서는 회헌의 연장선상에서, 회헌이 실효성을 거두게 하고 온전히 구현되게 하는 데에 구체화가 필요한 측면 내지는 부분들을 전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회헌이 IEME의 카리스마와 생활과 조직과 활동의 근본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오직 성좌의 승인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면, 이 지침서는 정기총회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법규들과 방침들을 담고 있다.
- 3 이 지침서의 법규들과 방침들은 IEME에 의해 축적된 삶의 경험의 결실로서, IEME 회원들이 스페인의 교구소속 재속 선교사제로서의 삶과 카리스마와 활동의 국면을 심화시키고, 회헌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현하는 데에 더욱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아 담은 것이다.
- 4 IEME가 오직 사제들을 위한 단체이긴 하지만, 이 지침서는 본회에 확정적 합체를 하여 본회의 삶과 체제와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활동 보조 선교사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경험도 수집하였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는 IEME의 선교가족 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당히 친근하다.

II. 지원자들의 양성

[A] 신학교

신학생들의 양성

- 5 IEME의 교구 성격이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본회에서 선교사로

서 활동하기를 지원하는 신학생들이 자기의 교구 신학교에서 교회의 학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학교담당 팀은, 위에 언급한 신학교들의 장상들의 협력 하에, 이 신학생들의 과정 수행과 선교적 양성을 돌보아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양성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IEME를 자기 집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IEME와 갈수록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팀은 이를 위해 IEME에 합체되기를 지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타의 방법들과 함께 합숙훈련과 특히 소위 ‘선교준비’ 과정을 활용해야 한다.

양성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주교회의와의 관계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판단하여 주교회의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감안해야 한다.

- 6 상황이 허락지 않거나 출신교구의 신학교에서 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에는, 그들의 신학교 교장들과 궁리하면서 그들에게 사제직에 진입하기 위한 다른 채널들을 제공해야 한다. 교구신학교 운영과 선교사 양성에 관한 법규들을 준수하면서 IEME의 신학교를 설립할 가능성은 늘 남아있다.

신학교담당 팀

- 7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은 확정적 합체를 한 회원들 중에서 신학교 교장과 신학교담당 팀의 여타 구성원들을 임명해야 하고, IEME가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대륙에서 일할 선교사들을 그 팀이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8 참신학교담당 팀의 관할권은 교장의 지휘 하에 있으며 회헌 45항에 규정되어 있다(또한 참조: 지침서 43항c와 44항).

[B] 선교준비 과정

9 선교준비 과정의 목적은 회헌 46항에 규정되어 있다.

10 선교준비 과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a) 반영하는 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교회의와 총원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감안하며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 b) 과정 중에 전개되는 활동들을 조정하기.
- c) 신학교담당 팀과 관련신학교들과 해당 교구들의 소견들을 참작하고, 그들이 소속된 교구장들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지원자들을 과정에 받아들이기.
- d) 이 과정에 참여하는 피교육생들의 과정 수행과 참여를 관리하고 전례와 개인적 기도와 사목 활동(특히 갓 서품을 받은 참가자들을 위하여)과 학과목 등을 편성하기.
- e) IEME에 수용하기 전에 각 지원자에 대한 보고서를 해마다 총원에 제출하기.

11 **학업의 기본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선교신학, 선교 사목학(토착화, 대화법, 해방, 교회기초공동체 등등), 사회분석, 문화 인류학, 종교 현상학, 외국어, IEME의 조직과 삶, 선교사 영성의 고유한 측면들과 문제점들, 대상 대륙들과 국가들의 당면과제.

12 **유연성**: 교육 참가자들의 출신과 연령과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에, 대화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현실에 맞게 전체 계획을 맞추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 13 **과정 참가자들의 장래 행선지에 관한 대화:** 과정의 2/4 분기에 총원과 과정 참가자들 간에 당사자의 장래 행선지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다만 회헌 79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참조: 지침서 20항).

[C] 지원자들의 자질

- 14 선교 생활에 요청되는 바들, 일하는 나라의 요청사항들 그리고 IEME가 바라는 바들은 회헌 13항~18항에서 언급하는 태도들을 각별히 개발하기를 요구하는데, 그중 특별히 강조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 a) 기도와 관상의 영성에서 그리고 일상적 봉사에 대한 실천에서 드러나는 은총과 믿음의 기쁜 생활.
 - b)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의 책임감에 대한 생기 있는 감각.
 - c) 팀과 그룹 내에서 다른 이들의 입장과 고유성에 자기의 능동성과 책임감을 조화시키는 법을 아는 능력.
 - d) 비 그리스도교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 개방된 정신.
 - e) 빈곤과 억압의 문제를 향한 감수성.
 - f) 다른 민족들과 문화들에 대한 경청과 수용을 하는 능력.
 - g) 생활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식별하는 비판적 능력
 - h) 주도적 정신과 창의적 상상력.

- l) 어려운 일들과 문젯거리들 앞에서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지조.

III. 그룹 내의 선교사들 ¹⁾

- 15 **그룹들의 설정:** 그룹의 설립과 위치선정 그리고 그 종지는 회헌 제1편과 66항에 명시된 IEME의 본성과 정체성과 성격을 드러내는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그룹을 세우기에 앞서, 기존 그룹들이 필요로 하는가와 인근 그룹들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주교회의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참조: 회헌 79항 d와 93항 1-c).
- 16 **행선지 교구와의 협약:** 다양한 다른 그룹들이 봉사하는 교구들과 협약을 함에 있어서, 재속선교사제의 카리스마, 사목조건들 그리고 IEME의 생활방식이 요구하는 바들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에 해당된다. 팀 내의 생활과 업무, 영성 생활과 평생교육. 또한 급여와 고국 방문 시 재정지원을 구체적화 해야 한다. 협약이 이루어지면, 현지 주교와 IEME의 총장(그룹의 조정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에 의해 승인되고 결재되어야 한다.
- 17 **현지 교회의 삶에 투입:** 그룹의 구성원들은 현지 사제단의 일원이 되어 그곳 주교와의 통교 안에서, 본회의 본연의 삶을 유지하고 본연의 카리스마를 수반하는 가운데, 자기가 보내진 교구의 사목에 관한 법규들을 따르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18 **그룹 내에서의 전문화:** 그룹들은 그들이 전개하는 선교활동에

1) 팀과 그룹에 대해서는 회헌의 23, 39, 48, 49, 51, 55, 57. 62~73; 79 a-d-e-j-m, 81 d 그리고 104~106항에서 다루고 있다.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 특히 일정 기간 사도적 활동의 경험을 쌓은 젊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당사자의 개인적 자질을 고려하여 전문 양성을 받도록 배려해야 한다(참조: 회헌 67항 1).

아울러 그 과목들은 공통 업무와 전체 IEME의 선의를 지향하고 있는 전문 학습이어야 하느니만큼, 원칙적으로, 총원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9 그룹들과 총원:

① 그룹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총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기속되어야 한다.

- a) 본회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이나 선언들.
- b) 새로운 선교 협약들의 체결을 수용에 대한 결정과 그룹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교구들과 맺은 협약들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미 체결되어 있는 협약들의 종지에 대한 결정.
- c) 그룹들 간에 이루어지는 선교사들의 교환.
- d) 그룹의 내부 규정들.
- e) 조정자의 선출.

② 그룹들은 정보제공과 통교의 표현으로, 해마다 재정 보고서와 여타 사목활동들과 그룹의 생활에 대한 보고서들을 송부해야 한다.

- 20 **선교사를 그룹에 등록하기:** 이는 출신교구 주교와의 대화를 거친 후, 해당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의 품행과 취향, 그리고 그룹들과 전체 IEME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참사회의 동의 를 얻은 총장이 한다.
- 21 **받아들임:** 업무현장에서의 시작에 관하여 회헌 48항에서 규정 하는 바에 더불어,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특히 조정자와 양 성 담당자는 새로운 선교사들에 대해 시작부터 각별한 배려를 보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판이하게 다른 인간들 사이에 파고들 어야 하는 새로운 선교사들이 그들을 맞는 백성에 대한 사랑으 로 그 백성을 위해 보다 수월하게 자신을 비우게 될 것이다(필 리 2,7).
- 22 **그룹과의 통교:** 선교사들은 회헌의 틀 안에서 그룹에 대한 소 속과 그룹과의 통교를 확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위한 것이다.
- a) 그룹의 구성원들이 영육 간에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형제 적 도움.
 - b) IEME의 카리스마와 기본적인 선택에 따른 생활과 행동의 공 동 목표에 동참.
 - c) 그룹의 내규와 결정사항들을 수용.
 - d) 팀 내에서 생활하기와 팀과 그룹 안에서의 삶과 일에 대한 정례적인 성찰.
 - e) 그룹의 정례 모임과 그룹에 의해 마련된 평생교육 활동에 참 여.

- 23 **다원성:** 팀들과 그룹들은, 삶과 행동의 공동 선택과 목표들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의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능과 카리스마와 자질의 다양성도 고려하면서, 건전한 다원성과 개인적 창의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24 **신앙의 공동체적 표출:** 팀들과 그룹들의 삶은 진실하고 단순하고 자발적인 영성의 시간들에서 자양분을 얻어야 한다. 거기에서 형제애가 굳건히 자라잡고, 파스카의 신비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성소에서 출발한 신앙과 하느님 체험을 나누며 신앙과 삶과 일, 투쟁과 기대, 긴장과 환희의 통합을 이룬다. 이러한 공동체적 표출은 기도와 개인의 체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 25 **상호간의 배려:** 그룹의 조정자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그룹의 모든 나머지 구성원들은, 특별히 고독해서, 질병에 걸려서, 스트레스와 시험에 들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선교사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자신의 성취와 기쁨을 그와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정자는 항상 그룹의 사람들과 사안들에 대해 필요한 관심을 쏟는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26 **그룹과의 통교의 단절:** 만일 어느 선교사가 그룹과의 통교를 단절한다면, 이 일은 회헌 57~59항의 규정에 비추어 총원에 알려서 당사자와 그룹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는 그의 출신교구의 주교의 의견을 듣고 진행된다.

그룹들 간의 관계

- 27 그룹들은 서로 잘 알게 하고 서로 풍요로워지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들 사이에 가능한 한 최고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a) 그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 사항들과 체험들의 결실들을 사무처에 보내어 유익성에 따라 IEME의 전체회보나, ‘Misiones Extranjeras’(외방선교), 혹은 ‘Id’(가라!) 등의 내부 잡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한다.
 - b) 특화된 업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휴식과 사목경험 견학을 위해서도 선교사들의 교류를 용이하게 한다.
 - c) 가능성과 필요성이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총원과의 조정을 통해서 목상 모임을 마련하면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그룹들 간의 정보제공 성격의 체험 나누기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별 그리고 대륙별 만남이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발휘한다.
 - d) 스페인에서의 휴가기간 중에 하계합숙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 e) 자기 그룹의 재화를 더 필요로 하는 다른 그룹들과 나누는 자세.

은퇴자와 환자의 그룹

- 28 스페인에 거주하는 연령이나 질병을 이유로 은퇴한 선교사들은 은퇴자와 환자를 위한 그룹의 구성원으로 편성된다. 다만 총원에 직접적으로 예측되는 것을 지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 29 이 그룹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에 의해 승인된 별도의 내부규정을 보유한다. 조정자는 총원과 협조하여 삶의 통교를 조장하고 그룹 고유의 필요한 것들을 돌보아야 한다.

IV.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총회에 예속된 선교사들

- 30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회에 직접적으로 예속되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 a) 미처 그룹으로 설립되지 않은 채 선교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팀들. 비록 그 구성원 중 일부가 그 원적이 다른 그룹에 속해 있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총회에서 대표성의 효력을 보유하기 위해 출신그룹과 함께 투표한다.
- b) 한 그룹에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신규 회원들이나 협력회원들.
- c) 3년을 초과한 부재로 인해 자신의 등록을 상실하였고 아직 한 그룹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을 상실한 이들.
- d) 연령이나 질병으로 은퇴하여 이 지위로 뽑힌 이들(참조: 지침서 28항).

- 31 총원은 은퇴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여타 총원에 직접적으로 예속된 회원들을 돌보기 위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대리인들을 임명할 수 있다(참조: 회헌 79항 c). 이 대리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부과 된다.

- a) 은퇴자와 환자의 기숙사의 기능을 지휘 감독하는 일.

- b) 스페인에 상주하는 은퇴자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일.
- c) 그룹의 회합들을 준비하고 거행함에 있어서, 은퇴자와 환자를 위한 그룹의 조정자를 보필하는 일.
- d) 스페인 국내이긴 하지만, IEME의 집들 외부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일과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
- e) 자기들이 거주하는 교구의 책임자들의 동의하에 선교 증진을 도모하고 상황이 부합하는 경우에 자기의 영육간의 보조를 가능한 만큼 제공하는 일.
- f) 앞서 언급한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특히 그들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총회에 보고하는 일.

V. 회의체의 대표성에 관한 규범

- 32 정기 총회를 위한 대표자들과 보조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회헌 86항에 규정된 바를 따라서 한다.
- 33 총원에 직접적으로 예속된 회원들의 선출을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a) 정기총회가 소집되고 나서, 사무총장은 다른 그룹에 등록됨 없이 직접적으로 총회에 예속된 모든 이들에게 이 집단에서 투표권과 피 투표권을 보유한 이들의 명단을 보내야 하고, 대표자들과 보조자들의 선출에 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 b) 그런 다음 조사의 결과를 그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앞서 언급

한 선출을 위해 우편으로 투표를 하도록 모두를 초대해야 한다.

c) 이 선출을 위해서는 상대 다수로 충분하다.

- 34 본 규정은 협력회원들 가운데 대표자들과 보조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 회헌 86항 f)에서 언급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VI. 공통 업무 ²⁾

[A] 일반 규범

- 35 총원의 구성원들과 그 밖의 공통 업무에 발령받은 이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이 승인한 고유한 법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소임 기간 동안 그들 모두는 출신 그룹에 근본 소속을 유지한다(참조: 회헌 95).
- 36 **총원에 예속:** 공통 업무들은 총원에 예속되고 그 조정을 받는다. 아울러 총원은 공통 업무의 기능들에 관한 그 밖의 법규들을 이 지침서에 규정할 수 있다.
- 37 **공통 업무의 조직**은 그 목적의 달성과 과업의 올바른 수행에 충분하면서도 최소한의 인력 고용이라는 단순성과 기능성으로 성격지어진다.
- 38 **인원:** 정기 총회는 총원의 참사들 중에 사무처의 각 부서들, 양성부, 홍보 및 선교증진 부, 전체 관리부의 부서장들을 임명한다. 공통 업무의 나머지 인원들은 총원에서 임명한다.

2) 참조: 회헌 96항.

- 39 **정례 회합:** 총원과 공통 업무의 인원들은 공통 관심사를 다루고 적절한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합을 해야 한다.
- 40 **비 정례 회합:** 각 부서는 총원에 회합과 아울러 프로그램들의 거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대한 결정은 총원에서 내린다.

[B] 사무처

- 41 사무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나머지 부서들의 협조를 받아 IEME의 전체 회보를 편집하는 일.
 - b) IEME의 본부 문서고를 맡아 문서를 보관하는 일.
 - c) 선교사들의 선교지역으로의 여행과 서류절차에 편의를 봐주는 일.
 - d) 총장실과 공통 업무 사무실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
- 42 사무처의 책임자는 사무총장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도 몸소 수행한다.
- a) 총장과 사무처를 비롯한 공통 업무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함께 총원 회합들의 의제를 준비하는 일.
 - b) 그 회합들에 필요한 자료를 편집하고 배포하는 일.

- c) 그 회합들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
- d) 총원이 부과하는 관련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일.

[C] 양성부

43 양성부의 관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다음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IEME 내에서 평생 양성을 증진시키는 일.
 - 학업과 묵상 그리고 특히 하계 합숙 모임의 조직.
 - 사목개혁 운동들과 선교활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통 관심사 관련 자료와 교육과정에 대한 보고.
 - 개혁과 전문화 관련 학문들에 대한 독려와 조언과 조정.
 - 장학금, 학자금 지원, 각종 도움업무 처리.
 - 그룹들이 주관하는 양성에 대한 후원.
 - 'Misiones Extranjeras'(외방선교) 잡지에 협동.
 - 선교 착수시기에 관한 업무 완수를 위해 그룹들을 독려.
- b) 학문, 사목, 영성, 그리고 공동생활의 측면에 입각해서 선교준비 과정의 조직, 기획, 지휘를 하는 일(참조: 회헌 36항; 지침서 9~13항).
- c) 기획과 업무 평가로 협력을 함으로써 신학교담당 팀과 총원간의 기준들의 조화를 보증하는 일.
- d) 선교 준비 과정을 위한 것으로 지목된 과목들에 관련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IEME의 중앙 도서관을 서적과 잡지 통합 분과 내에서 관리하는 일.

- 44 양성부장은 선교준비 과정을 몸소 지휘하고 총원과 신학교담당 팀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D] 홍보 및 선교증진 부

- 45 이 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이 구현될 것이다.

- a) 선교지역 교구들의 대리인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스페인 내에서 선교의식을 고취하는 일.
- b) 선교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의 연대를 촉구하는 일.
- c) 선교지역 교회들이 제공하는 가치들과 문젯거리들을 증언하는 일.
- d) IEME와 선교사들의 활동들을 그들의 교구 교회들과 가족들과 후원자들과 친구들에게 알림으로써, IEME가 교구사제의 선교성소의 채널임을 알게 되도록 하는 일.

- 46 홍보 및 선교증진 부의 관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이 부서의 부서장과 2인 이상의 공통 업무 소속 선교사들로 구성된 편집 자문단과 함께 잡지 ‘Id(가라!)’의 지휘와 출판하는 일.
- b) 잡지 ‘Misiones Extranjeras’(외방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일.
- c) 본회가 설립회원으로 있는 잡지 ‘Pueblos del Tercer Mundo’(제삼 세계의 민족들) 내에서 본회를 대표하고 협력하는 일.

- d) 선교를 위한 전국차원 신학교에 위탁된 교황설립 교리교사를 위한 에피파니아 모금회(Pontificia Colecta de Epifania para los Catequistas)의 조직과 조정을 하는 일. 이 부서의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인류복음화성이 임명하는 ‘홍보 책임자’ 직을 맡는 것이 전제된다.
- e) 선교증진에 연관된 업무 부서와 함께 IEME를 대표하고 협력하는 일.
- f) 선교증진 캠페인과, 신학교담당 팀과 함께 협동하는 가운데 제삼세계와의 연대를 위한, 여타 활동들에 IEME의 선교사들의 참여를 조정하는 일.
- g) 사회홍보매체에 IEME와 그 활동들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보도 자료를 주는 일.
- h) IEME의 후원자들과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전체 관리부서와 협력하는 일.

47 IEME의 모든 선교사들은 자기가 선교지에 있건 스페인에 있건 선교증진에 있어서 이 부서와 연대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48 이 부서의 부서장은 이부서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E] 전체 관리부

49 이 부서의 부서장은 총관리국장이다. 회헌 99항에서 언급하는 기능들에 아울러, 다음과 같은 관할 업무들이 이 부서에 해당된다.

- a) 모든 회원들이 사회 보장의 혜택 안에 있게 하거나, 그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와 동등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몸소 혹은 경우에 따라서 교구의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일.
- b) 전체 관리부서에 현금을 예치한 그룹들이나 개인들의 통장을 처리하는 일.
- c) IEME의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돌보는 일.
- d) IEME가 확실한 중장기 경제적 안정성에 이르게 하는 방식들을 모색하는 일.

[F] 은퇴자와 환자 지원부

- 50 은퇴자들과 환자들은 언제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 부서는 이들 각자가 바라는 것들과 가능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매 사안마다 보다 적절한 해결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능성에 따라서, IEME의 집들에서나 선교그룹에서나 출신교구에서나 어느 다른 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1 이 업무는 총원 혹은 총원의 대리인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회헌 79항 c).
- 52 이 업무를 위해서 마드리드 市의 피리네오스 路 소재 IEME의 기숙사가 배정될 것이고 수용능력과 시설에 필요조건들이 모두 채워져야 한다. 총원은 이 집의 일상적 관리의 책임자를 그의 기능을 특정하면서 임명해야 한다.

- 53 IEME의 선교사들은 스페인의 교구소속 재속사제들이 은퇴하는 연령에 맞추어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
- 54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은퇴자들과 환자들은, 총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거주지를 IEME의 이런 목적을 띤 집이나, IEME의 집 외부의 다른 곳이나, 스페인 내이건 특히 일했던 나라를 비롯한 외국이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IEME의 본원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총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배사항이 아니다.
- 55 협력 사제들의 경우,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에 한해서, 연령이나 질병을 이유로 은퇴할 수 있다. 총원과 당사자의 출신 교구는 위에 언급한 계약에 입각해서 그리고 IEME에서 봉사한 햇수를 고려해서 그의 상황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G] IEME의 본부

- 56 IEME의 본부에는 총원과 공통 업무들과 양성 센터와 입회담당 업무부서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 57 총원은 본부 건물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 58 지나가던 길에 들르거나 휴가차 와 있는 IEME의 선교사들은 영접 봉사를 누릴 수 있다.
- 59 본부에서의 상주는 총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0 마드리드에서의 보수교육을 승인 받은 IEME의 선교사들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린 총원의 임의 결정에 따라 본부나 피

리네오스 路 소재 기숙사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학자금과 기숙사운영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H] 잡지 ‘Misiones Extranjeras’(외방선교)

- 61 잡지 ‘Misiones Extranjeras’(외방선교)는 총원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는 편집 자문단의 계획과 결정을 실행하고 관리한다. 잡지 편집 자문단을 비롯한 여러 부서들의 장들은 각기 역할을 해야 한다.

VII. 경제제도와 선교사들의 사회보장

[A] 일반 기준

- 62 IEME는 회헌 99항에 표현된 기준들에 입각해서 경제에 관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 63 경제 제도에 관해 회헌이 규정한 법규들(참조: 회헌 35~37항과 98~106항)과 더불어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규정하는 결정 사항들로 준수해야 한다.

[B] 선교사들의 경제 제도

1. 그룹들 내의 선교사들

- 64 각 그룹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 채 참여하는 경제적 일치를 형성함에 있어서(참조: 회헌 104항), 재화의 분배와 공유에 더욱 적합한 방식을 세우기 위해서, 법규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선교사들이 일하는 환경의 다양성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자립성을 위해 필요한 메

커니즘을 구축하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

- 65 회원들은 자신의 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소속그룹이 규정한 형식에 따라 그룹에 헌납해야 한다(참조: 40항).
- 66 IEME의 선교사들은 선교 지역에서 개인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그룹들에도 적용된다. 다만 총원의 명시적 권한 부여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통 업무와 총원에 종사하는 선교사들

- 67 공통 업무와 총원을 구성하는 선교사들은 경제적 효율을 위해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된다.

3. 총원 직속 선교사들

- 68 어느 그룹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총원에 직접적으로 예속된 이들은, 자기의 정직한 생활유지, 개인적 비용에 대한 현금 그리고 자기의 활동들로 인해 취득한 보수의 사용에 있어서, 자기의 경제적 상태를 총원에 맞추어야 한다.

4. 은퇴한 선교사들

- 69 총원은 연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IEME의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70 IEME의 집들에 거주하는 이들은:
- a) 개인의 비용을 위해서 공통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과 동등한 액수를 수취해야 한다.

- b) 은퇴자들 편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 취득하는 수입을 전체 관리부에 건네주어야 한다.
- c) 다른 개념의 연금을 수령하기에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이 교구사제들을 위한 연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수령액 전부를 전체 관리부에 납입해야 하고, 만일 그 액수가 교구사제의 연금을 초과하면 교구사제들을 위한 연금의 액수만큼만 납입하면 된다.

71 IEME의 집들 밖에 거주하는 이들은:

- a)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수령하거나, 그와 같은 액수나 그보다 많은 액수의 다른 개념 연금을 수령한다면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생활유지비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액수가 사회보장제도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관리부가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부족분을 채워주어야 한다.
- b) 만일 IEME에서의 활동과는 다른 출처에서 유래하며 사회보장제도 연금 수령에 장애가 되지 않는 연금을 못 받는 이들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전체 관리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연금과 동등한 액수를 충당해주어야 한다.

5. 일시적으로 스페인에 머무는 환자 선교사들

72 일시적으로 스페인에 머물면서 진료를 받는 선교사들은:

- a) 원한다면 피리네오스 路 소재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
- b) 무상진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그룹들이 그리고

부차적으로 전체 관리부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c) 자유 유용자금에 대해서는 그룹들의 법규를 따른다.

[C] 채무

- 73 그룹이나 총원이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의 주도로 진 빚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선교사와 해당 그룹이 진다.

[D] 사회보장

- 74 총원은 모든 선교사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등록이 되게 하든지 혹은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유리하지 않은 몇몇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75 한편 그룹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 건강 혜택의 보장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 76 출신교구나 선교지 교구에서 사회보장 보험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룹을 통해서 혹은 부차적으로 전체 관리부를 통해서 IEME가 지불해야 한다.

VIII. 결론

- 77 이 모든 법규는, IEME와 그 회원과 협력 회원 각자의 선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 즉 형제요 가족이라는 정신 안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선교 사제성소를 증진시키는 영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 의의를 달성한다.